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리모델링 공사보조, 현장사무보조, 사업관리) 채용공고

1) 채용개요

연번	모집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리모델링 공사보조	1명	'26.09.21~'27.01.31 (약 4개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임대자산관리팀
2	현장사무보조1	1명	'26.09.21~'28.03.30 (약 18개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6 (탄소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소)
3	현장사무보조2	1명	'26.09.21~'28.02.14 (약 17개월)	전북 남원시 향교동 4-1 (남원구암 조성공사 사업소)
4	사업관리 (대체채용)	1명	'26.09.21~'27.02.28 (약 5개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주거복지사업1팀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모집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분야(연번)별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모집분야(연번)별 근로개시일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연번4 '사업관리' 모집분야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으로 상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 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출퇴근 가능여부를 판단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2) 업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연번1] 리모델링 공사보조	○ 착공 전 공사관리보조 - 석면조사용역/석면해체제거 감리 용역 업무 보조 - 폐기물/직접구매자재 업무 보조 - 공사 세대확보를 위한 이주현황 관리 ○ 착공 후 공사관리보조 - 리모델링 공사관리/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 보조 - 현장품질점검, 기성확인, 직접구매자재 검수 관련 업무 보조 - 석면제거공사 현장관리/공사 관련 민원대응 업무보조 -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보조 등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그 밖에 안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반복 작업 등의 단순 검측 업무와 관리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 준공품질, 하자점검 및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보조 - 타 관리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사업 준공정산 보조 - 사업연도별, 수급사별, 지급자재사별 현황 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 보조
[연번2] 현장사무보조1	○ 건설공사 현장의 사무보조 업무 - 일반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우편물, 소모품·비품·차량 관리 - 민원인 및 내방객 상담 및 응접 - 그 밖에 사무환경 관리 등 일상적 사무보조 업무 등
[연번3] 현장사무보조2	○ 건설공사 현장의 사무보조 업무 - 감독현장의 사무보조, 일반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 민원인 및 내방객 상담 및 응접 - 사무실 소모품 구입·관리 및 환경관리 - 감독실 비품 및 차량관리 등 사무실 관리 - 기타 감독 업무 중 일상적 업무의 사무보조
[연번4] 사업관리 (대체채용)	○ 전북권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3) 자격요건

모집분야	자격요건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주1)}
[연번1] 리모델링 공사보조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 건축' 직무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2)}
[연번2~3]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연번4] 사업관리 (대체채용)	○ 필요자격 없음

주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주2) 리모델링 공사보조(건축) 직무분야 해당 자격증

모집 직무	해당 자격증
건축	• (기술사 등)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 (산업기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설안전

4) 급여조건

모집분야	급 여 조 건			
[연번1] 리모델링 공사보조	○ 월 임금 이백구십칠만육천구백팔십 원(₩2,976,980)			
	계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976,980	2,465,980	100,000	411,000
[연번2~3] 현장사무보조	○ 월 임금 이백오십일만오백일십 원(₩2,510,510)			
	계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510,510	2,066,150	100,000	344,360
[연번4] 사업관리 (대체채용)	○ 월 임금 이백오십삼만팔천팔백사십 원(₩2,538,840)			
	계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538,840	2,090,430	100,000	348,410

○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름

5) 근무조건

모집분야	근무조건
공 통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 ○ 근무지 : '1) 채용개요' 참조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전형	최종선정
8.24(월) 09:00 ~8.27(목) 17:00	발표일:9.7(월) [선발: 5배수]	면접일:9.10(목) [선발: 1배수]	발표일:9.16(수)

○ 전형방법

구 분	내 용																	
서류전형 (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20)																	
	<table><tr><th rowspan="2">계</th><th rowspan="2">자기 소개</th><th rowspan="2">지원 동기</th><th rowspan="2">경험 및 경력</th><th colspan="3">가 점</th></tr><tr><th>경력</th><th>자격</th><th>특별우대</th></tr><tr><td>100+가점</td><td>30점</td><td>30점</td><td>40점</td><td>5점</td><td>5점</td><td>10점</td></tr></table>	계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경험 및 경력	가 점			경력	자격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30점	40점	5점	5점	10점
	계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경험 및 경력	가 점									
		경력	자격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30점	40점	5점	5점	10점												
* 가점(경력/자격)의 경우 모집분야별 상이하므로 '7) 우대사항' 확인 필요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9.7(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면접전형 (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점(10)																	
	<table><tr><th rowspan="2">계</th><th rowspan="2">의사소통능력</th><th rowspan="2">문제해결능력</th><th rowspan="2">조직적응력</th><th>가점</th></tr><tr><th>특별우대</th></tr><tr><td>100+가점</td><td>30점</td><td>40점</td><td>30점</td><td>10점</td></tr></table>	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가점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40점	30점	10점						
	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가점									
		특별우대																
100+가점	30점	40점	30점	10점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구 분	내 용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 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9.16(수)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7) 우대사항

모집분야	우대대상		해당사항	가점
공통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특별 우대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연번1] 리모델링 공사보조	일반 우대	경력	해당 직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연번2~3] 현장사무보조	일반 우대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모집분야	우대대상		해당사항	가점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주1)}	서류전형 만점(100점) 의 5% 가점 부여
[연번4] 사업관리 (대체채용)	일반 우대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100점) 의 5% 가점 부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100점) 의 3% 가점 부여

- ^{주1)}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급), ATC 캐드마스터(1·2급),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 '일반우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8) 지원서 접수 등

- 접수기간 : 2026.08.24.(월) 09:00 ~ 2026.08.27.(목) 17: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면접전형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면접 전 공지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

모집분야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진위 확인을 위한 원본 지참)
	특별우대(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집분야	제출대상	제출서류
[연번1] 리모델링 공사보조	자격(필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일반우대(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연번2~3] 현장사무 보조	자격(필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일반우대(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연번4] 사업관리 (대체채용)	일반우대(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 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별지 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

9)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2개월('26.11.20)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0503-6994-6994) 또는 E-mail(kycleo@lh.or.kr)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된 입사지원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신청 대상이 아니며, 청구기한 이후에는 자동파기됩니다.
- 면접전형 이후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서식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별지 참조) 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kycleo@lh.or.kr)로 신청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간('26.09.16.~'26.11.15.)
-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1) 문의 및 서류제출

- 채용담당자 : 과장 김영찬 (전화 : 063-230-6123)
- 직무담당자 연락처
 - (리모델링 공사보조) 063-230-6144
 - (현장사무보조1) 070-7725-4882
 - (현장사무보조2) 070-7833-6590
 - (사업관리) 063-230-6202
- E-Mail 접수 : kycleo@lh.or.kr

2026년 08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직인생략)

[별지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